

의 정 정 보

2005 - 13 7. 18

목 차

I. 중앙기관 정보	1
II. 타 시·도 의회동향	5
III. 개정 법령	9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실 ☎ (042) 606-5021

I. 중앙기관 정보

① 7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무료

- 행정자치부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였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열람 및 교부시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거주지별 차등 부과하던 것을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단일화하였다.
- 개인정보보호 및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기능 강화 조치로는,
 -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교부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본인이 경우에만 표기되도록 하고, 호주사항은 서식에서 완전 삭제하였고,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교부시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서식에 표기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시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토록 하여 교부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으며
 - 전입신고시 통·리장 사후 확인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허위전입을 방지하고 확인명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 전입세대 열람신청 대상자범위를 담보주택근저당설정 금융기관과 소액임차인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물건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국회 농수위, 농지법 통과로 도시민 농지취득 쉬워져

- 금년 10월부터 영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 농지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농림부는 6월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장기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5년 이상 임대하면 된다.
- 도시민들은 현재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 개정안은 또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ha 미만의 농지만 그대로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농지는 바로 처분해야 한다.
- 아울러 도시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에는 1ha 미만에 대해서만 소유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2ha의 농지를 추가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정부부처, 조직·인력·보수 자율운영의 총액인건비제 확정

- 정부는 6월 30일, “혁신장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방안, 범정부적 성과관리 방안, 정부혁신지수 개발·활용 계획 등 주요 혁신 현안을 확정하였다.
-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운영할 기관으로는 행자부·예산처·인사위를 비롯하여 노동부·농림부, 통계청·조달청·특허청 등 총 8개 중앙행정기관과 23개 책임운영기관이 선정되었다.
 - 시범운영기관은 기존의 인건비 예산이외에, 기타직 보수, 실·국·과 등 기관운영경비 등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동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 및 보수 관리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시행 초기에 기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상위직 쏠림현상이나 기관간 보수·수당운영 불균형 등을 감안하여 4급 이상의 정원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수당항목의 신설·폐지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승진 활성화, 특별승급제도 운영,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 조직·예산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원·직급 조정방안, 재정사업 평가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성과관리 확산 방안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 자율성 부여방안

□ 조직·정원관리 자율성 부여방안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정원 규모	정원 증감, 계급별 정원 조정시 행자부 협의 필요	▪ 행자부는 부처 정원상한 관리 ▪ 상한 범위 내 부처 자율 결정
계급별 정원	행자부 승인	부처 자율 결정
기구 설치	▪ 국단위 이상 기구는 직제(대통령령)로 규정 ▪ 과단위 기구는 직제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하되 상한 설정	▪ 국단위 이상 기구는 직제 규정(현행 유지) ▪ 과단위 기구는 상한없이 부처 자율적 설치

□ 보수관리 자율성 부여방안

구 분	세 부 내 역
기본항목	봉급, 기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성과향상 항목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업무수행 지원항목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경비와 활동비 등
복지항목	주택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등

⇒ 성과향상항목 내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상 및 지급 방법의 결정 등을 부처 자율 결정

Ⅱ. 타 시·도의회 동향

① 강원도의회, 시·군 축제조례 제정 준비

-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내 시·군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도와 시·군축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의원발의로 준비하고 있다.
- 조례안에 따르면 시·군축제 중 강원도의 대표성이 있는 지역 축제를 해당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의, 행사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 또 심의를 통해 결정된 행사는 도와 해당 시·군이 공동개최해 전국적인 축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차원의 집중적인 예산지원 등도 포함됐다.
- 현재 도내의 지역축제가 124개로 난립하면서 선거를 의식한 관주도의 형식적 축제, 서민 참여율 저조, 차별화 부족 , 연계 관광상품 미흡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다.
- 이에 따라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사 축제의 통폐합, 부실한 소모성 축제의 대폭 정비 등 해결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② 제주도의회, 6자회담 제주개최 건의문 채택

-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6자회담 제주 개최 건의문’을 채택했다.
- 제주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제주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평화의 섬으로서 외교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 동포애로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없이 북한에 감귤과 당근보내기 운동을 추진했다”며
 -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의 한결같은 뜻이 6자회담 제주 개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된다면, 평화는 물론 남북간의 통일 논의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 특히 “이처럼 명분과 상징성 모두 갖춘 6자회담 개최의 최적지는 제주도뿐이라며, 6자회담의 개최는 곧 평화의 섬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길이 될 것이며,
 -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남북정상회담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된다면, 분명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이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자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③ 전북도의회, 새만금 지원조례 통과에 대해 시민단체 반발

-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전북새만금사업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민·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와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는 지난 7월 7일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 ‘전북 새만금 사업지원 조례’ 폐기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이들은 “전북도가 5월 추경 편성과정에서 4,800만원이 배정된 새만금 사업 홍보 예산을 무려 16.5배인 7억9,900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한데 대해 도의회가 의견수렴없이 통과시켜줬다”며 “더욱이 도의회가 또 다시 찬성단체에 지원금을 언제라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 이들은 또 “조례안 통과는 전북지역에서 새만금 찬성 여론몰이가 얼마나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도의회는 도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조례를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편 도의회는 의원발의한 ‘전북새만금사업지원 조례안’을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의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앞으로 새만금 민간단체가 찬성 운동을 벌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Ⅲ. 개정 법령

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05.7.1)

-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추가
-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범위를 현행 “진료비중 100분의 50”에서 “진료비중 100분의 60”으로 조정

②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시행 '05.7.1)

- 근해안강망어업은 5통 이내의 어구(인천·경기도 및 충남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10통 이내의 어구)를, 자망어업과 통발어업은 어선의 톤급규모별 어구사용량의 범위를 정하여 그 어구사용량 범위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 어구를 바다에 부설할 때에는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발을 설치하되, 그 부표 또는 깃발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크기 안에 어업자명 및 어업허가사항 등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05.6.13)

- 농어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현행 30/100에서 40/100으로 인상